

공

고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2호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고지주소	호출명칭	처분내용	처분일자
1	(유)대향환경	422011200000153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320남경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2	김영엽	42202020000028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170번길	303수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3	주식회사 오션제이드마린	732015200000015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허가취소	2022. 9. 2.
4	변태안	942020210005587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1길	태안부산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5	변태안	942020210005585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2길	태안부산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6	변태안	942020210005586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3길	태안부산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1길	신경남건기501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1길	신경남건기502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8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9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3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8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1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0611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9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운장부산53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79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0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0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1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1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2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2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7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3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8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4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5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5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6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86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9	경남 거제시 아주동	진승거제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2. 9. 2.

4. 참고사항

-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